

#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하병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92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. 3. 5.

발의의원 : 하병문 의원  
김원규 의원  
김지만 의원  
박갑상 의원  
윤기배 의원  
이만규 의원  
이태손 의원  
황순자 의원

## 1. 제안이유

아파트의 단지 내 도로, 주차장 등에서의 교통사고 증가,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의 각종 안전사고 등 약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절실하나, 사유지인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따라서, 교통안전시설 등 각종 사고 예방시설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개선하여,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공동주택의 도로, 주차장 등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,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의 설치

및 유지·보수에 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에 포함시켜,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 방지 및 생활환경의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.

(안 제22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. (공동주택 관리법 등)

나. 예산조치 : 해당부서 협의완료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##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22조제2항제3호 중 “CCTV 등 범죄예방시설”을 “CCTV, 교통 안전시설 등 범죄 및 사고예방시설”로, “유지·보수 사업”을 “유지·보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1호(중전의 제10호) 중 “보수”를 “설치 및 보수”로 한다.

10.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·보수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2조(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개보수 또는 유지·보수를 지원하는 경우, 하자담보책임 등 하자보수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기간이 경과된 시설에 한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보안등,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·보수 사업</p> <p>4. ~ 9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10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의 보수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2조(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CCTV, 교통 안전시설 등 범죄 및 사고 예방시설----- 유지·보수</p> <p>4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 시설의 설치 및 유지·보수</p> <p>11. -----</p> <p>----- 설치 및 보수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## 【공동주택관리법】

제85조(관리비용의 지원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·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용자할 수 있다.